

선한 인재 장학금 참여신청서

“서울대학교가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인재에게 문을 더 활짝 엽니다.”

인적사항

발전기금 약정과 동시에 서울대학교발전후원회의 회원이 됩니다.

성명 (회사(단체)명 / 대표자)		☐ 기부 내역 공개를 원하지 않음	
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	생년월일	년 월 일 (양 / 음)
구 분	☐ 동문	학부(과)	입학년도
	☐ 학부모	학생성명	학부(과) 입학년도
	☐ 교직원	부서	☐ 기타
연 락 처	우편물 수령 주소 (☐ 자택 / ☐ 직장)		이메일
	전화	자택 직장	휴대폰
	직장	직장명	부서 직위

약정정보

약정금액	☐ 정액기부		☐ 월 정액기부	
	일금 원 (₩)		매월 () 원씩	
	☐ 일시납 년 월 일 ☐ 분할납 년 월 ~ 년 월 () 회 분납		년 월 부터 매월 정기자동이체	
희망사용처	☒ 선한 인재 장학금 (보통재산) 가계소득 1분위 이하* 학생(기초 생활 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용도 * 수혜대상은 보건복지부 ‘사회보장정보시스템’ 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.			

납부방법

☐ 무통장입금	농협 : 079-17-000136 / 신한 : 100-014-328209 / 우리 : 1006-601-280134 (예금주: 서울대발전기금)		
☐ 자동이체	은행명	계좌번호	예금주 이체일: ☐ 10일 ☐ 25일
☐ 신용카드	카드명	카드번호	유효기간: 년 월
☐ 지로입금 연락 주시면 용지를 보내드립니다. (지로번호 7514340, www.giro.or.kr)			
☐ 교직원 급여공제			

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고지사항 고시

필 수 정 보	회원 확인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	정보 수집 및 제공: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	성명, 필수연락처, 필수주소, 약정금액, 납부방식(일시납, 분할납), 기금용도 지정, 기부금 원금 보존 여부, 무통장입금, 자동이체 (은행명, 계좌번호, 예금주, 이체일), 신용카드(카드명, 카드번호, 유효기간), 지로입금, 교직원 급여공제	
선 택 정 보	회원제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	정보 수집 및 제공: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	동문(학부(과), 입학년도), 학부모(학생성명, 학생학부(과), 학생 입학년도), 교직원(부서), 기타, 우편물 수령주소(자택, 직장), 생년월일, 이메일, 자택 전화번호, 직장 전화번호, 휴대폰 번호, 직장명, 부서, 직위	
고유식별정보	주민등록번호(기부영수증 발급 및 예우목적)	정보 수집 및 제공: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정 보 제 공	기부금 납부 및 예우·모금통계를 위한 제3자 정보제공	정보 수집 및 제공: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	자동이체, 신용카드 결제,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구성하는 각 기관의 별도 기부자 예우 및 모금 통계	

※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근거: [필수정보, 선택정보]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, [고유식별정보] 소득세법 제160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, 제208조의3,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, 법인세법 제112조의2등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의 작성·보관 의무 준수
※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영수증 및 예우품 발송 등 기부자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출연할 것을 약정합니다.

년 월 일

약정인

(서명)

※ 본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,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발전기금 재단으로 송부해 주십시오.



서울대학교 발전기금
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

151-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연구공원본관 (940동) 2층
Tel:02-880-8004 Fax:02-872-4149 www.snu.or.kr snuf@snu.ac.kr

※ ARS 후원전화 060-700-8004 한 통화로 학교발전기금 5,000원이 적립됩니다. ※ 유증 및 부동산 등 기타 현물자산 기부를 희망하실 경우 담당자가 상담해 드립니다.
※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출연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개인은 세액공제, 법인은 연간 이익금액의 50% 내에서 손금 처리 가능)